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21. 6. 29.

사회건설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- 가. 제출일자: 2021년 6월 7일
- 나. 제 출 자: 영등포구청장
- 다. 회부일자: 2021년 6월 10일
- 라. 상정일자: 제231회 영등포구의회 2021년도 제1차 정례회
사회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(2021. 6. 22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도시국장 이정화)

- 가. 제안이유
 - 「경관법」에 따라 시행하는 경관심의 시 공동위원회 구성이 재량사항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관 조례」를 일부개정하고자 함.
- 나. 주요내용
 -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관 조례」 별표1 구분 제4호의 분류란 중 “다중이용시설(공동위원회)”를 “다중이용시설”로 변경하여,
 -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경관심의 시 공동위원회를 반드시 별도 구성하여야 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를 해소하고자 공동위원회 별도 구성이 재량사항임을 명확화 함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이원배)

- 본 안건은 「경관법」에 따라 시행하는 경관심의 시 공동위원회 구성이 재량사항임을 명확하게 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임.

- 주요내용은
 - 별표1 구분 제4호의 분류란 중 “다중이용시설(공동위원회)”를 “다중이용시설”로 변경하였음.

- 본 조례안은 「경관법」에서 경관심의 시 공동위원회 별도 구성이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위법에 맞게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중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공동위원회 별도 구성이 재량사항임을 명확히 하고자 정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 범위에서 규정되어 있고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.

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354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: 2021. 6. .
제 출 자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「경관법」에 따라 시행하는 경관심의 시 공동위원회 구성이 재량사항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관 조례」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관 조례」 별표1 구분 제4호의 분류란 중 “다중이용시설(공동위원회)”를 “다중이용시설”로 변경
- 나.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경관심의 시 공동위원회를 반드시 별도 구성하여야 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를 해소하여 공동위원회 별도 구성이 재량사항임을 명확화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경관법」
- 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- 다. 협의사항
 - 1) 규제심사: 신설·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
 - 2) 부패영향평가·성별영향분석평가·인권영향평가: 해당없음
- 라. 입법예고(2021. 4. 22. ~ 5. 12./ 20일 간) 결과: 의견 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별표1 구분
제4호의 분류란 중 “다중이용시설(공동위원회)”를 “다중이용시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별표 1]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건축물의 경관심의대상</u>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15%;">구분</th> <th style="width: 15%;">분류</th> <th style="width: 70%;">건축물의 종류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. 경관지구</td> <td>조망가로 특화경관지구</td> <td>- 3층 이상 또는 높이 12m 초과 - 건폐율 30% 초과 건축물</td> </tr> <tr> <td>2. 중점경관관리구역</td> <td>한강변</td> <td>- 7층 이상 개별 건축물 - 7층 이상 공동주택</td> </tr> <tr> <td>3. 공공건축물</td> <td>모든 용도</td> <td>5층 미만 또는 1,000㎡미만 허가(협의) 대상 건축물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2">4. 일반건축물</td> <td>공동주택</td> <td>색채경관계획(채도색 포함) (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」 제23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으로 한다.)</td> </tr> <tr> <td>다중이용시설 (공동위원회)</td> <td>연면적 5,000㎡ 이상 (문화 및 집회시설, 종교시설, 판매시설,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,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,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등) 또는 16층 이상 건축물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분류	건축물의 종류	1. 경관지구	조망가로 특화경관지구	- 3층 이상 또는 높이 12m 초과 - 건폐율 30% 초과 건축물	2. 중점경관관리구역	한강변	- 7층 이상 개별 건축물 - 7층 이상 공동주택	3. 공공건축물	모든 용도	5층 미만 또는 1,000㎡미만 허가(협의) 대상 건축물	4. 일반건축물	공동주택	색채경관계획(채도색 포함) (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」 제23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으로 한다.)	다중이용시설 (공동위원회)	연면적 5,000㎡ 이상 (문화 및 집회시설, 종교시설, 판매시설,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,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,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등) 또는 16층 이상 건축물	<p>별표 1]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건축물의 경관심의대상</u>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15%;">구분</th> <th style="width: 15%;">분류</th> <th style="width: 70%;">건축물의 종류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. 경관지구</td> <td>조망가로 특화경관지구</td> <td>- 3층 이상 또는 높이 12m 초과 - 건폐율 30% 초과 건축물</td> </tr> <tr> <td>2. 중점경관관리구역</td> <td>한강변</td> <td>- 7층 이상 개별 건축물 - 7층 이상 공동주택</td> </tr> <tr> <td>3. 공공건축물</td> <td>모든 용도</td> <td>5층 미만 또는 1,000㎡미만 허가(협의) 대상 건축물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2">4. 일반건축물</td> <td>공동주택</td> <td>색채경관계획(채도색 포함) (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」 제23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으로 한다.)</td> </tr> <tr> <td>다중이용시설</td> <td>연면적 5,000㎡ 이상 (문화 및 집회시설, 종교시설, 판매시설,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,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,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등) 또는 16층 이상 건축물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분류	건축물의 종류	1. 경관지구	조망가로 특화경관지구	- 3층 이상 또는 높이 12m 초과 - 건폐율 30% 초과 건축물	2. 중점경관관리구역	한강변	- 7층 이상 개별 건축물 - 7층 이상 공동주택	3. 공공건축물	모든 용도	5층 미만 또는 1,000㎡미만 허가(협의) 대상 건축물	4. 일반건축물	공동주택	색채경관계획(채도색 포함) (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」 제23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으로 한다.)	다중이용시설	연면적 5,000㎡ 이상 (문화 및 집회시설, 종교시설, 판매시설,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,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,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등) 또는 16층 이상 건축물
구분	분류	건축물의 종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. 경관지구	조망가로 특화경관지구	- 3층 이상 또는 높이 12m 초과 - 건폐율 30% 초과 건축물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. 중점경관관리구역	한강변	- 7층 이상 개별 건축물 - 7층 이상 공동주택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. 공공건축물	모든 용도	5층 미만 또는 1,000㎡미만 허가(협의) 대상 건축물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. 일반건축물	공동주택	색채경관계획(채도색 포함) (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」 제23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으로 한다.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다중이용시설 (공동위원회)	연면적 5,000㎡ 이상 (문화 및 집회시설, 종교시설, 판매시설,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,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,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등) 또는 16층 이상 건축물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분	분류	건축물의 종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. 경관지구	조망가로 특화경관지구	- 3층 이상 또는 높이 12m 초과 - 건폐율 30% 초과 건축물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. 중점경관관리구역	한강변	- 7층 이상 개별 건축물 - 7층 이상 공동주택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. 공공건축물	모든 용도	5층 미만 또는 1,000㎡미만 허가(협의) 대상 건축물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. 일반건축물	공동주택	색채경관계획(채도색 포함) (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」 제23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으로 한다.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다중이용시설	연면적 5,000㎡ 이상 (문화 및 집회시설, 종교시설, 판매시설,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,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,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등) 또는 16층 이상 건축물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